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79호
2.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
3. 발의일자 : 2023. 10. 9.
4. 회부일자 : 2023. 10. 23.

II. 제안이유

1.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마약 구매 및 투약 등으로 인한 유해약물 오·남용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생의 육체 및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주류·담배·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정신건강 회복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3.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청소년 유해약물 교육실적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6. 유해약물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표준안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7. 유해약물 예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8. 유해약물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9. 학생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0.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성과평가, 사무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 타

○ 입법예고(2023. 10. 26. ~ 10. 30.)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9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279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약물 오·남용에 따르는 피해를 줄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마약의 인터넷 유통이 성행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¹⁾
- 또한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범죄는 매우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5월 98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올해 3월~5월 212명으로 116.3% 증가하였습니다.

[표-1]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단위: 명)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 검거
'22.3월~5월	98	1,068	752	425	286	404	3,033
'23.3월~5월	212	1,133	800	572	401	552	3,670
증가율	116.3%	6.1%	6.4%	34.6%	40.2%	36.6%	21.0%

1) 보도자료: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아니다... 30% "마약 마음먹으면 쉽게 구할 것"(한국일보, 2023.2.11.)

- 특히 현재 마약 거래가 사회관계망 및 인터넷을 통해 생활공간에서까지 손쉽게 이루어져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를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실태조사 등(안 제6조),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등(안 제7조), 예방교육 표준안 제공(안 제8조), 교사 집중교육(안 제9조), 자문위원회(안 제10조), 홍보 및 캠페인 등(안 제11조),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포상(안 제14조)을 규정하여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²⁾ 안 제3조

2)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에서 교육감에게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지역 연계망 구축의 책무를 부여한 것은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3)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을 보건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2023년도 학교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내 학교에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정책·안전기획관-1513, 2023. 2. 10.).

[표-2] 서울시교육청 학교급별·영역별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7월 「2024년도 불법 약물 사용 근절 예방 교육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교육자료 개발 영역의 사업을 추진 중인바 안 제5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 2023. 10. 27.).

다. 대안 제안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그러나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긴 2건의 조례안이 이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과 기존 2건의 조례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³⁾을 제안하는 것이 입법경제 및 시민의 혼란 방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우리 위원회 회부 유해약물 관련 조례안

연번	의안번호	조례안명	발의자	우리 위원회 회부일자
1	제4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김춘곤 의원	2023. 2. 9.
2	제93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경 의원 등 19명	2023. 6. 5.
3	제127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기덕 의원	2023. 10. 23.

3) 대안(代案)이라 함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임(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 p.26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악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팀장	정진국 02) 2180-8263	입법조사관	김한수 02) 2180-8269
--------	----------------------	-------	----------------------